2013므1875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보도자료

공보관(전화 : 3480-1451)

가수 A의 부인 B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혼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궁하였음(주심 박병대 대법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모18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다거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인정되지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그 주된 원인이나 대등한 정도의원인을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